#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78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 송석준 • 곽규택 • 김예지

고동진 • 이헌승 • 김선교

박정하 · 장동혁 · 이종욱

김성원 · 김미애 · 유상범

윤상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2023년 기준)이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

낮은 출생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출산장려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6,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6,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선 왕 <u>&lt;신 설&gt;</u>	제104조의36(출산장려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 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 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 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 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제 12조의3, 제12조의4(종전 제37 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 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 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 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 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 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 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 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

제104조의36, 제122조
의4제1항

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 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 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 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 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 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 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 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 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 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②
제104조의36, 제122조의4
제1항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	
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